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해역 출어어선의 출입항 신고방법 개선〉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3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방법 개선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5.

3. 회 부 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
항하는 어선이 출·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
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
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방법 개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 중 신고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출입항 신고) ① (생략)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u> 에 출어하는 경우	3. <u>조업자제해역</u> ----- -----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조¹⁾는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²⁾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³⁾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① 최초 신고의 경우, ②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③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⁴⁾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고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접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어선의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출항 일시, 출항지, 입항 일시 및 장소 등과 조업 업종 및 해역, 평균조업일수 등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⁵⁾.

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2)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함.

3) 어선위치발신장치로는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따라 전체 어선을 설치대상으로 하는 선박패스장치(V-Pass),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단말기설치) 등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등이 있음.

4)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5) 「어선안전조업」 제8조(출입항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이 중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출어 시 마다 신고를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⁶⁾에 따른 것으로, 직접 신고의 대상에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직접 신고 의무 대상	▶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 어선출입항신고서 내용상 변동이 있는 경우 ▶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삭제

-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한 계선 이남의 일정 범위를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 기간과 조업수역을 관리하고 있는 수역으로 동해특정해역과 서해특정해역이 있음.

[특정해역 현황]

구분	동해특정해역	서해특정해역
조업어종	오징어, 대게, 대구, 도루묵, 등	꽃게, 소라, 홍어류, 조피볼락 등
조업어선	제한 없음 (주로 강원도 선적어선 조업)	저인망, 안강망, 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
조업기간	조업 구역 및 어업별로 상이	

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방식 개선 건의문(강원도)

- 이와 관련, ①현행법상 특정해역 출어 시 출어등록(연 1회), 안전장비 비치, 선단 조업, 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위치보고(일 3회)⁷⁾ 등 일반해역보다 강화하여 출어선을 관리하고 있는 점,
- ②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정상 작동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경우 자동으로 출항 일시, 출항지, 입항 일시 및 장 등이 발신되고 승선원 명부, 조업 업종 등의 파악이 가능한 점⁸⁾ 등을 고려할 때, 어선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 출입항 신고에 있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임⁹⁾.

7) 「어선안전조업법」 제12조(출어등록)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船團)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①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해역 출어선 등록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8) 승선원 명부, 조업 업종 등은 최초 신고 시와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9)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특정해역 출어 시 자동신고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임.

[특정해역 출어선 관리 현황]

어선안전조업법	주요 내용
제12조(출어등록)	특정해역 출어등록 * 전국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안전장비 비치 * 무선설비, 구명설비, 나침반, 해도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2척이상 선단 편성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동해) 속초해양경찰서, (서해) 인천해양경찰서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특정해역 관할 안전본부 교신 가입 * 1일 3회 위치 통지
제25조(안전조업교육)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안전조업 특별교육 이수(연 1회, 2시간)

□ 한편,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불편함 해소와 원활한 어업 활동을 위해 기존의 직접 대면 신고를 비대면 자동 출입항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¹⁰⁾하고 있고,

개정안 시행 시 출입항 신고절차·방법 규율 등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소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현재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특정해역에 입·출항 시 매번 어업인이 새벽마다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되는 등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강원도 고성군 등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어업인들은 항구로 나가면 바로 특정해역과 맞물려 있어 조업이 아닌 단순 이동할 시에도 해경에 방문신고 해야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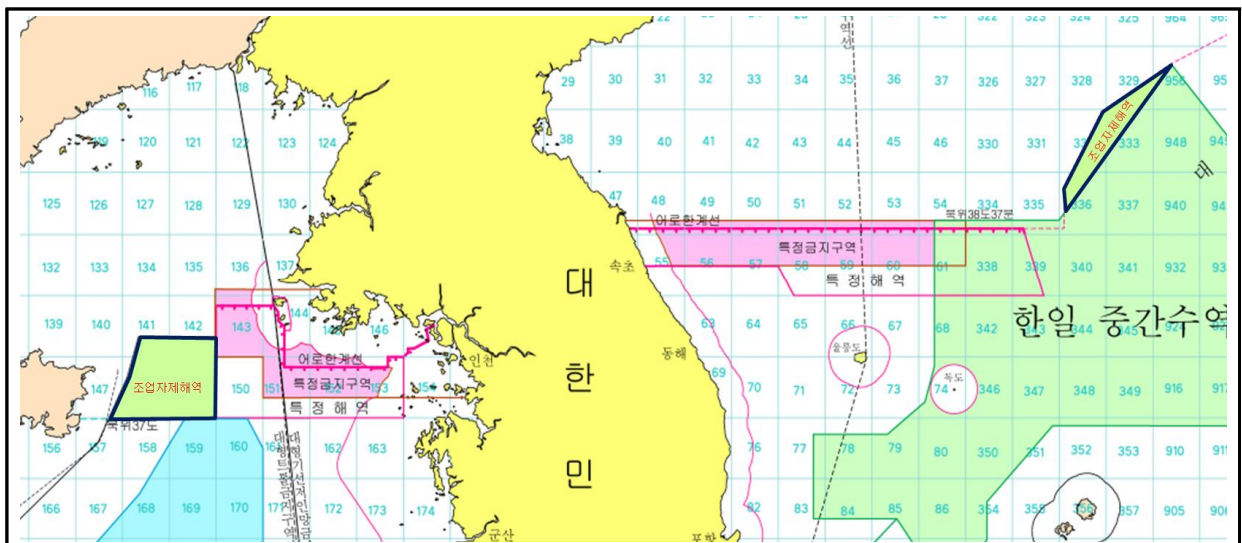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1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일반현황

- (특정해역)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나포방지를 목적으로 조업 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 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수역
 - (동해특정해역)
 - 조업어선: 제한 없음(주로 강원도 선적어선 조업)
 - 조업기간: 조업구역 및 어업별로 상이
 - (서해특정해역)
 - 조업어선: 저인망, 안강망, 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
 - 조업기간: 조업구역 및 어업별로 상이함
- (조업자제해역) 조업한계선 외측에 북한과 러시아 인접수역에서 피랍방지를 위해 설정한 수역
 - (동해조업자제해역)
 - 조업어선: 출어등록을 한 근해통발어선
 - 조업기간: 연중
 - (서해조업자제해역)
 - 조업어선 없음.



참고2

특정해역 출어선 등록 현황

□ **총 1,640척**(동해특정해역 1,015척, 서해특정해역 625척)

▶ 특정해역 출어선 현황(출어등록 기준-'23.01.04 ~ '24.01.03, 유효기간 1년)

구 분	계(척)	중부청 (인천, 평택, 태안, 보령)	서해청 (부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남해청 (사천, 통영, 창원, 부산, 울산)	동해청 (속초, 동해, 울진, 포항)	제주청 (제주, 서귀포)
총 계	1,640	446	201	32	955	6
동 해	1,015	8	34	14	955	4
서 해	625	438	167	18	-	2

* 인천 ~ 서귀포 : 지방청 소속 해경서